

제422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9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95)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9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05)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1)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8)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6)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7)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2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3)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5)
26.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한창민 의원 등 110인 발의)(의안번호 2204404)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6)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5)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8)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7)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3)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9)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9)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1)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6)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3)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7)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9)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7)
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3)
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5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3)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4)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5)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8)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6)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8)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9)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3)
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2)
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0)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4)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9)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7)
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3)
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9)
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7)
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1)
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0)
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0)
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9)
77. 업무현황보고(비금융)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소관
 -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자. 독립기념관
 - 차. 88관광개발(주)
 - 카. 한국소비자원
 -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정된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1) 8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8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2) 8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95)	8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4)	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7)	8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8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8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4)	8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9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5)	9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5)	9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9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6)	9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5)	9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1)	9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9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8)	9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9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16)	9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17)	9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9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9
2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3)	9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5)	9
26.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한창민 의원 등 110인 발의)(의안번호	

2204404)	9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6)	9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5)	9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0)	9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8)	9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2)	9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0)	1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7)	10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10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10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3)	10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9) ..	10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9) ..	10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1) ..	10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	10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	10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56)	10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1)	10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23)	10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7)	10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9)	10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7)	10

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10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10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63)	10
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10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10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11
5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3)	11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254)	11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5)	11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48)	11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86)	11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8)	11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9)	11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11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3)	11
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2)	11
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0)	11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4)	11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9)	11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7)	11
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3)	11
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9)	11
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7)	11
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1)	11
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0)	11
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0)	11
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1

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11
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9)	11
77. 업무현황보고(비급용)	14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 독립기념관	
차. 88관광개발(주)	
카.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먼저 한 이후에 우리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1)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2)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5)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08)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65)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5)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5)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1)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8)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2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3)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5)
26.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한창민 의원 등 110인 발의)(의안 번호 2204404)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6)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5)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8)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7)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3)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9)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9)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1)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56)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3)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07)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9)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7)
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63)
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5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3)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4)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5)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8)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6)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8)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9)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3)
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2)
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0)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4)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9)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7)
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3)
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9)
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7)
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1)
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0)
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0)
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9)

(10시12분)

○위원장 윤한홍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6항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현행법의 CVC 행위제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의 추가적 완화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편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시의무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에도 적용하고 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주 간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시하게 하는 한편 상법의 집중투표제 등 대규모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 상장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현재 이중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 다른 법률안들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을 법률에서 정의하면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보다 축소하고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은 제외하는 한편 자료제출 미비에 따른 처벌 수준도 낮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규제의 핵심 준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수법자의 의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일인의 개념이 이미 해석과 사례의 축적을 통해 확립되어 있으며 친족 및 자료제출 대상의 범위 축소 등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공정한 경쟁 및 법 위반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건 등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액수를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지원금의 인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의 날 신설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10월 8일이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고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부패 방지권익위법은 이미 불이익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소위원장님 및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 독립기념관

차. 88관광개발(주)

카.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시19분)

○위원장 윤한홍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 게재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모두의 보훈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절차 간소

화를 통해 보훈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한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과 현재 900개인 위탁병원을 올해는 1060개까지 확충하는 등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돌봄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맞춤형 체험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의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실현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 접근성 제고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제대군인 주간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보훈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가보훈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출범 이후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의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대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의 안정성과 민생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구심점이 되어 분야별 현안을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민생 안정 등 안정적 국정운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총괄과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개혁, 첨단산업 육성,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현안 대응과 함께

국무회의, 차관회의 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국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의 자율과 창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2900여 건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와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 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에 주력해 왔으며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2035 NDC 수립은 물론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한편 사기 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납세자 권리보호, 세종·제주 및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5년을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 주 지위 향상을 위해 불공정 관행도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대비를 위해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상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고

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조 분야 제도개선 등으로 생애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업종 및 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도 방지하겠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소송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속·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허용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24년도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평가점수는 63점에서 64점으로 그리고 국가 순위는 180개국 중 32위에서 30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GDP가 2.64%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선 현장의 부패 개선 성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생활 안정을 돋겠습니다.

쪽방 주민, 자립준비청년, 한센인 등 어려운 분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고충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주거, 취업, 금융, 학업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 현장의 부패 근절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차이가 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는 95개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들께서 한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해 약 1400만 건에 달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회 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저출생 대응, 중소기업 보호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두 귀담아듣고 더욱더 국민 편에서 일하는 권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된 데이터 등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등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신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딥시크, IP 카메라, 로봇 청소기 등을 통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조사·처분 후 3년 내 추가적인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공지능 개인정보 특례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개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90여 개국이 참여하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그간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은 개인정보위 출범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간부 현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과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국가 현안에 대한 대응과 중장기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한 정책지식 창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기관 평가제도의 정착, 정책연구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성과 확산 등 제도적 차원의 정비와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정책 연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도전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확대, 연구 인프라 강화 등 연구와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AI·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책연구 환경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위하여 개방형 정책연구 플랫폼 운영과 국내외 융복합 공동연구 지원, 연구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국가 싱크탱크로서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질의 5분, 오후에도 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오후에 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오전에 시간을 좀 더 드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제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용만 위원님 1분 드리세요.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는데요.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독립기념관장의 자료제출 거부는 중감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고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번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목록과 141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 과정에서 독립기념관 내부 자체 법무검토에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했고요. 당연히 국회 중감법에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관장 재량으로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고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냐?’ 물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에서도, 처벌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까지, 고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간사님들이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 순서 좀 조정이 됐네요. 김재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도봉구 출신 김재섭입니다.

저는 오늘 AI 기본법이랑 국무조정실의 역할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과 이야기 좀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고 너도 나도 AI 관련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도 빨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 EU 이외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 제정이 됐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이후에 좀 꼼꼼하게 뜯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의 속기록을 좀 보니까 법사위원장도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많은 장관님들께서도 그리고 실국장님께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은 두 번째로 통과가 됐지만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대응을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관님들, 학계·산업계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저의 우려와 함께 같이 종합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에 관한 문제인데 규제에 관한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평 규제의 문제점인데 수평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산업별·기능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규제를 하게 되는 수평 규제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AI 기본법을 뜯어보게 되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은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다 고영향 인공지능이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 또 기능별로 달라져야 되는 규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산업계랑 학계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기부가 하위 법령들로 이 규제들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일단 기본법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위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령 같은 것들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규제 두 번째 관점으로 AI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이러다 보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규제와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모든 인공지능을 다 과기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별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문제들이 분명히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한번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라리 일본처럼 아예 총무성이랑 경제산업성에 힘을 완전히 몰아줘 가지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제까지도 컨트롤타워할 수 있게끔 해 버리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과기부가 업무만 많고 대응은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선정 과정 5개 중에 2개가 AI 관련된 걸로 돼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법에 문제점들이 좀 있고 기본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에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후 것의 시간을 2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후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LTV 담합 관련된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것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출 금리 관련된 담합에서 조금 이동이 돼 가지고 LTV 담합으로 재조사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정위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담합이 아니다. 그냥 정보를 공유한 차원이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사안을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담합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LTV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을 집사는 문제 그리고 집값 문제, 경제 문제랑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우려가 좀 되는 것은 과거에도 비슷한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말하자면 결국에는 실패를 했던 사례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보니까 주담대 가산금리 담합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있었고요. 2012년에 CD금리 담합 조사하는 것도 4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이 된 사안이 있었고요. 또 생보사 관련돼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있어 가지고 결국 과징금에 대해서 4%의 이자까지 생보사가 돌려받은 사안이 있었던 만큼, 지금 은행권에서 ‘LTV 관련된 정보 공유가 담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LTV 관련해서 정보 공유 담합 이슈가 지금 공정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심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이 돼서 그 부분을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잉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과소 규제가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소비자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언론기사 보고 그것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얘기 넣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봐서 아는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산모들의 부담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이 지원금이 나오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가격을 올려 버린 몇 개의 업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내 조리원 114곳 중에 37곳이 요금을 인상했다는데 여기에 혹시 담합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 주시고요. 이게 소비자 부담 완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된 것은 아닌지 소비자원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장 윤수현**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아까 국무조정실장 답변.....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AI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준에 없는 틀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관계 부처 간에도 사실은 이견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번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규제가 중복이 되거나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수준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문제는 지금 과기부 중심으로 AI 기본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도 관계 부처 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 조금조금씩 시각이 다른 부분을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크게 덜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국가AI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국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샌드박스라는 게 사실 기존 법의 틀에서 못 하는 부분 내지는 기존의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 보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아마 AI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샌드박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고 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알게 됐습니까? 세종 관사에서 TV 보고 알게 된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한덕수 총리는 저녁 8시 4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이나 총리로부터 사전 연락이나 설명을 이때까지 받은 게 없다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국무위원 소집에 관해서 새벽 2시 17분경 유선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이때 총리나 경제부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당시에는 경제부총리님하고 통화를 못 했고요. 그 통보를 하는 시점에는 제가 총리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이강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명령은 몇 시에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대통령님의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2시 그때 한 10분쯤 해서 연락을 돌릴 때는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국무회의장으로 다 모여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강일 위원** 국무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때는 총리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강일 위원** 총리입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강일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시간, 2시 30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군 병력 철수 지시를 한 것은 2시 50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벽 2시가 넘어서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했다 아니면 총리가 했다, 총리가 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했겠지요. 소집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은 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국조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처럼……

○**이강일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집 목적 부분에 대한 얘기……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건 저희가 특별히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강일 위원** 잠시만요.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들은 건 없고 물은 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이 해제를 위해서 일단은 모이는 게 좋겠다라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이 총리님께 있었고요. 총리께서 소집을 해라 해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새벽 2시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오라 가라 하면 사실은 사유를 얘기하거나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판단을 해서 국무위원들 모이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은 내란이나 2차 계엄 관련한 검찰 조사 받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계엄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이강일 위원 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소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기라성 같은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 사유 없이 국무회의에 소집했다면 이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무슨 내용에 대해서요?

○이강일 위원 그때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서로 상황이 공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계속 말씀 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라서.

○이강일 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벽 2시 6분경에 안전에 대한 언급 없이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아서 무시했다. 4시가 다 돼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총리가 이게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 사항이나 아니면 전체 국무위원, 그때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인데 무시를 했어요. 무시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무시한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총리님……

○이강일 위원 아니, 해제하려고 모이자고 하는 걸 무시해요? 여기 다, 본인의 워딩이 ‘무시했다’고 돼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부총리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워딩으로 했는데, 무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 2시 17분경 국무위원 소집은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제2차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본 위원이 정황상 낸 결론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안전을 설명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전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이강일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실 거예요?

○이강일 위원 1분만 당겨 쓸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당겨 쓰세요, 오후에 하시고.

○이강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후에도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이게.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정황이라고, 저는 아주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여러 국무위원들도 증언하듯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불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2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과 국무위원들이 회피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그런 진술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헌정질서를 수호하느냐, 파괴하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파괴하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총칼로 남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치고 괴뢰 공산당의 짓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총리비서실장님, 실체적 진실을 조금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내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정황들이 2차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보훈부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안질의 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에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3·1 정신을……

○김용만 위원 지금 대답에 헌법이 나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두 가지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왜 헌법이 나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헌법에는 3·1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는 말이 나오고 1965년에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것을 답을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에 따르면……

○김용만 위원 그만하세요.

○강훈식 위원 질문에 답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게 이해를……

○김용만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백범 김구가 중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에 의하면……

○김용만 위원 답변 제가 안 듣겠다고 얘기……

시간 멈춰 주세요.

제가 답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역사…… 실제 그게 어떻게, 소이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만 백범 김구님이 한국인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훈부장관님.

국무조정실장님, 일단은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난번 국감 때, 10월에도 얘기를 주신 게—똑같은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민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돼서 국제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정부 입장이랑 배치되는 입장 표명을 국무위원들이 하면 좀 주지시켜 가지고 사회 혼란을 막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니까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제 가족들 국적도 모르겠습니까? 보훈부장관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답이 왜 헌법부터 나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김용만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면 저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넘어갑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만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보훈부장관님,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들어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PPT 봐 주세요.

보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김용만 위원**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12월 3일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발행된 날짜 2024년 12월 12일,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장실에 기입함'. 이거 보훈부가 준 거 아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게 위조예요. 형법에는 공문서 위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길에서 누가 이거를 팔고 있던데 이게 뭐냐?', 만약 이게 사실이면 위조한 공문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돈을 받고—이게 사기죄지요, 사기죄—본인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뉴스로 한번 나왔던 거는 점검을 했고 상장은 오늘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국가보훈부에서 점검을 해서 아니라는 걸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게 1월 5일인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지요. 국가보훈부는 대응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지고 사실관계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데 지금 장관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2025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초기 오보 대응,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적시 대응하겠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훈업무 시행지침 왜 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살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거 무대응으로 넘어갈 일 아닙니다. 보훈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게 나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보훈부가 하는 업무들이 다양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부장관님, 답변을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보훈부에서 판단한 내용을, 장관님이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실장님이 총리께 전화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등등 해서, 그랬더니 계엄이 됐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인영 위원 그러면 서로 통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서울에 도착해서 정부청사로 들어가니까 총리가 계셨을 테고 그래서 총리한테 바로 갔을 거고. 그때 총리가 하신 말씀이 뭐니까? 계엄이 됐다는 얘기는 할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때 절차적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보다 사실은 제대로 된 회의는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됐다’ 이런 팩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절차적인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거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니, 그 팩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게 판단해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던 거지요.

○이인영 위원 어쨌든 그렇게 규정적인 얘기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무 안건도 없었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인영 위원 그런 규정적인 얘기는 안 했고 그냥 팩트로만 얘기했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뉘앙스상 부정적이었다, 이런 거 덧붙인 얘기이고. 덧붙인 얘기지 일단 규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쨌든 계엄이 됐으니까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소집을 하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국제적인 대외적인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라든가 이런 필요 조치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일단 그 당시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한이 좀 있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모이시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에 통고가 제대로 된 거냐, 통고가 된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었고 이게 통고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통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실은 저희도 유례없는 경우라서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여러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적인 걸 밟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인력들, 공무원들 비상출근……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있는 사람이 검토를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흡결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국무회의에 대한 개시가 있어야 되고 종결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안전이 있어야 되고 안전의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부서까지 얘기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것은 제가 지금 추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했던 얘기만 정확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요 절차적인 성립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족수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그렇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의안번호 등 안전 상정, 심의 절차 이런 것들도 있고 사후적으로 속기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의 공식성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장소……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의결 안 하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등등 있는데 그때 총리가 이야기했던 절차적인, 실체적인 흡결이 상당히 있었다 이것의 구체적인 워딩이 뭐냐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저도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까지는 이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인영 위원** 기억이 안 나거나 얘기가 없었거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얘기는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사후적으로 ‘절차적·실체적 흡결이 상당히 있었다,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총리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논

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족수를 성립시켜 버린 거예요. 의결정족수는 아니지만 의사정족수를, 개회정족수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계엄 방지용이나 아니면 시간 지연용 이런 국무회의와 또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질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체적인 흡결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판단할 위치에는 현재 있지 않고……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유의 이야기들이 있었나고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당시에는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게 재판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의 희미한 기억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저도 1분만 쓸게요.

국조실장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하셨던 것은 제대로 된 회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방망이 두드린 것도 없었고 안건도 없었고……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당시에 말씀하신 워딩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인영 위원 방망이 두드린 게 없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 정도?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건도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인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적 흡결이 많이 있었다 이것과 다르게 ‘절차적·실체적 흡결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체적 흡결과 관련한 워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없었다는 아니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정확한 워딩을……

○이인영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없었다는 것을……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니, 정확한 워딩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의 워딩이 있나 이거지요. 정확한 워딩은 누구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뭐, 제가 희미한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하여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나중에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절차적·실체적 흡결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절차적 흡결과 관련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위현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실체적 흡결과 관련한 이런 워딩에 대해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인영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

일단 그 정도 합시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앞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훈부장관이 김구 선생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단답으로도 대답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오늘 질의 준비한 건 그게 아닌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다시 답변드릴까요?

○**강훈식 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데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왜냐하면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달라서요.

○**강훈식 위원** 장관, 내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똑바로 하셨어야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 명의의, 보훈부의 명의로 허위 공문서가 남발되고 있는 증거 사진을 보여 주면 당연히 허위 문서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알아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무위원이 그런 대답을 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분에 대한 국적을 물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 헌법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틀린 답변이라는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보도자료 내세요.

한국소비자원 원장님 나와 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민생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마도 부처의 여러 관계 조정 역할이 필요해서 국무조정실장님도 이것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강훈식 위원** 작년부터 제가 국감 때 소비자가 문화생활에 피해 겪는 것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공연계 선예매 제도 관련해서 티켓값 인상한다고, 견인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고 공정위는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소득공제 중에 발생되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비자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원장님, 제가 보이는 데로 와 주세요.

소비자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업무를 좀 넘어설까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소득공제를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또 문화비를 관리하는 문체부 또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는 소비자원, 각 부처의 입장들을 고려해 보면, 국조실도 관심 갖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것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이렇게 구매했을 때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제보다—공제받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까만—10% 정도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걸 받는 게 더 이득인데요.

작년 한 해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데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적은 정무위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 속에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작년에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건수가 약 55만 건 정도 됩니다. 인터파크가 한 41만 건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했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이 좀 넘습니다, 카카오도 14만 건.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규모가 2018년 이후에,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누락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응에 대한 문제나 실제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된다는 사실이 개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SNS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비 결제 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누락돼도 사업자가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는 소비자들 구제책으로 할 정확한 유인책이 없는 거지요.

쿠팡은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도서 판매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쿠팡은 아예 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문화비. 이것도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쿠팡에서 책을 사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문화 결제 건이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누락이 되니까 아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제 오류, 그러니까 문화비 소득공제사업자의 결제 오류를 개선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게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올 7월 달부터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정치만 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7000곳이고 헬스장은 1만 3000곳 정도 되는데요. 이게 또 PT와 같은 개인교습은 문화비로 적용되지…… 없습니다. 이걸 적용받으려면

헬스장에서 단말기를 2개 놔야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와 이것 구분해서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또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구조로는 추가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부터—여러 가지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전반적인 조사의 개선사항들을 파악하는 건 소비자원이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윤수현** 예, 저 내용 알고 있고요. 저희 소비자원에서는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개선 방안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신속하게 현황 파악하고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서 이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이건 국무조정실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고 또 아주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해결에 적극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李憲昇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부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수도세·전기세가 체납이 되고 화장실마저 폐쇄돼 가지고 주변 관청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봤습니다.

○**李憲昇 위원** 해당 부서는 작년 연말 예산심사에서 부서경비가 0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주요 업무가 마비가 돼 있고 또 심지어 청소용역비가 없어져서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출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한 4조 정도, 4.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주요 삭감 내역을 보니까 아이돌봄수당,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예산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또 금융위 혁신성장펀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외식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들도 대규모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도 2조 4000억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대규모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는 혹시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현재 그것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규모라든지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추경 편성 계획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현재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게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추경은 오히려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30조 넘는 세수가 평크가 난 상황인 만큼 너무 무분별하게 나랏돈을 푼다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내수를 회복하고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이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매우 유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딥시크 측에 2주의 답변 기한을 두고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질의서 보낸 것 중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이 왔고요. 추가적인 답변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플랜 A·B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딥시크가 국내에 출시된 후에 한 삼사일 만에 질의서를 일차적으로 보냈고요. 질의서를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외교 채널도 통하고 국제적인 공조, 대화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딥시크 측과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또 반대로 딥시크 측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 특히 한국에서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상대적으로 빨리 반응을 한 편이긴 합니다.

○**李憲昇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넘어갔는가 파악이 됩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자체적인 기술 분석을 하면서 파악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딥시크의 서버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제3의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제3의 서버로 넘어간 데이터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분석과 조사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엊그제 위원회에서 향후 법상에 AI 특례 신설 및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미 딥시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개인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을 하고 옵트아웃(opt-out)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딥시크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일단 앱이 차단이 된 것은 위낙 사안이 급하고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단 추가적인 다운로드는 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운로드한 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이미 다운로드돼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고 그 데이터가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실증특례라든가 대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李憲昇 위원 딥시크 측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을 해 가지고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은 마련했는데 우리 한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유럽에 적용한 추가 약관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 부분은 사전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 국가들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좀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유럽 국가들하고 계속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 부탁합니다.

○ 李憲昇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원 위원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잘 안 보여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어떠실까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무작위 수집이라든가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할 텐데요. 우선 전광훈 목사와 그 일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고 하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보이십니까, 혹시?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지금 화면이 뜨지 않고 있는데요.

○ 김승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7대 결의사항 중에 전광훈 목사 운영하는 자유마을이라는 데 회원으로 가입

시키고 그다음에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을 해 주세요, 선교카드에 가입, 자유일보 월 2만 원 정기 구독, 광화문ON 앱 다운, 너알아TV, 일천만방송TV 구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만 며칠 사이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승원 위원**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광화문에 오신 분들한테 이런 신청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목적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거고요. 본인도 이렇게 밝히고 있고 지금 선교카드 가입을 받고 있는데 60대, 70대, 80대가 85%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르신 상대로 해서, 주로 타깃이 어르신이라는 거지요. 선교카드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퍼스트모바일, 알뜰폰을 가입시켜서 그 수익을 전광훈 목사가, 사실은 일가가 좌지우지 할 텐데 마치 그 수익을 가입자 혹은 가입을 독려한 중간 모집책한테 돌려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뜰폰이 사실은 유사한 KT 자회사 알뜰폰보다 2만 4000원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60·70·80대 어르신들이 여기에 그냥 가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휴대폰 주소록, 차량 운행 정보, 휴대폰 사용 실태, 이용 내역, 가입 정보, 쿠키, 접속 로그, 접속 IP,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 등을 가입하는 분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을 한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은 좀 과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일단 휴대폰 주소록은 왜 이것을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입수하려고 하는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량 운행 정보도 그렇고요. 휴대폰 사용 실태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개별 항목들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어떤 목적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원 위원** 다른 알뜰폰 가입 회사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라도 혹은 국가기관이라도 목적 외의 정보수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건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제공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전광훈 목사의 가족 회사인 엔제이브릿지라든가 엔제이어스에게 공유를 합니다.

다음 화면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신청서에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지금 맨 우측에 있는 제공받는 자가 전광훈 목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들, 법인체들이고요. 그다음에 맨 왼쪽은 이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해서 보이지도 않게끔 그렇게 지금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체크만을 통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해 보겠고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부정한 목적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고소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한답니다. 여론조사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가끔 이상하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파악하고 또.....

○**김승원 위원** 절차 진행까지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국민권익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공익신고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탄압에 앞장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 기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방심위에서 심의해 달라 그런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권익위에 신고가 됐지요? 그리고 방심위는 이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심의에 올려서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민원사주라는 그런 의혹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권익위에서 신고를 심의해서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방심위에 다시 송부를 했고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이 민원인 정보를 누설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개요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위법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심위원회장을 신고를 했더니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방심위로 다시 송부해서 류희림이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실상 감독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감독기관이 분명하지 않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천천히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이 불명하다 이래서 다시 셀프 기관 면죄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적어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실 정도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소지가 있고 또 이것을 셀프로 이렇게 방심위로 보낸 이 자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송부였다, 방심위 셀프 송부는 위법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공익신고자들을 경찰에 이첩한 겁니다. 여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거지요. 그런데 공익신고자들을 이첩한 혐의는 방심위원장의 가족들 개인정보를 탐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권익위는 이런 부패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형벌, 징계, 행정처분의 감경·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형의 감경·면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보냈다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다른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돼 있습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따라서 방심위 직원들이 설령 비밀·개인정보를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앞장서 가지고 신고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겁니다, 경찰에 보낸 건. 이 법 위반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 탐지했다는 이유로 이것 사실 비밀준수의무 면제 위반 이것에 대한 감경 규정 그리고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기관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이런 형사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조치 이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불법에 기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원천 무효라 다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나 법 위반을 한 책임자들 반드시 전면 재조사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형사 이첩, 수사기관 이첩 조치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다 거쳐서 진행이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한 게 아니고 방심위원회에 송부를 했고 방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는 감독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방심위원회의 감독기관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해충돌 사건은 아시다시피 과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이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감사원도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찰은 되지만 이런 사안은 감사원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첩보다는 송부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송부를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그것을 셀프 송부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원위원회에서 다 토의를 거쳐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 저희 위원회 신고 전에 사실관계는 아마 언론에 먼저 그것을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입법……

○전현희 위원 그것도 법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언론에 제공한 것은 별개로 저희가 판단해서……

○전현희 위원 언론 제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래서 저희는 전원위원회의 토의를 다 거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전원위원회 회의록과 거기에 관여된 전원위원들의 명단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나중에 제출하고 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국가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김현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작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5·18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 왜곡이다라고 극우세력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질의 기억납니다.

○김현정 위원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입장문이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취하지 않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후속으로……

○김현정 위원 안 하셨지요? 팩트니까. '5·18은 이미 역사 평가가 끝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께서 김구 선생님 관련된 질의할 때도, 국가의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훈부장관이면 국적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바로 답을 못 하는 것은 보훈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정 위원 아니,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김현정 위원 그건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장관이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대처를 안 하니까 자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역사 왜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극우 집회에 뿌려졌던 한 신문사의 1면 기사예요. 혹시 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김현정 위원 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못 봤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엄군의 학살이 아직도 생생한 금남로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신문 기사가 뿌려졌다는 사실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 적혀 있는 것 보세요. '5·18은 DJ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저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에……

○김현정 위원 이것도 바로 답 못 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아니요, 어떻게 답을 할 시간을 안 주십니까?

○김현정 위원 지금 팩트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만 묻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답을 하려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5·18……

○김현정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5·18유공자법에 의하면 이미……

○김현정 위원 그동안 계속 장관님의 대답하는 태도가 자꾸 예둘러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대답을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정확하게 답합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만 얘기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5·18유공자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리가 끝난 사실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5·18 특별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18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도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대처 방안 좀 알려 주시고요.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공정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현정 위원** 전광훈 알뜰폰 들어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김현정 위원** 전광훈 알뜰폰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부터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는데 등기상 대표는 김성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광훈 목사의 딸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퍼스트모바일은 KT 망을 이용해서 알뜰폰 사업을 전개하는 단순 재판매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KT 자회사 요금제에 비해서 무려 30~64%가 비쌉니다, 요금이. 그리고 타 독립 업계에 비해서 이게 10~22%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알뜰폰 사업의 취지가 저렴한 도매가를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통신비 절약이 그 목표였지 않습니까? 알뜰폰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전광훈 알뜰폰은 종교적·정치적 기부 등을 앞세워서 비싼 요금제로 부적절하게 수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알뜰폰 판매 과정에서 가족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시장질서 혼순, 불공정거래행위, 상품 판매 수익금을 통한 연금 지급 약속, 저렴한 핸드폰 요금제라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더 비싼 요금제로 판매하는 것, 이것은 공정거래법 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위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퍼스트모바일은 자사의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청년사업단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핸드폰 개통이라든지 조작법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 표시광고법도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오후 것을 2분만……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3분 더 드리세요.

○**김현정 위원** 국무총리비서실장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예.

○**김현정 위원** 지난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 습격하는 사태 발생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사건 당시에 폭도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서 ‘차은경 나와라’, ‘차은경을 죽이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법원 내부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것 테러 맞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김현정 위원** 아니, 지금 테러방지법에 돼 있는 규정에 보면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동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해 행위인데 이게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김현정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제는 이런 법원 테러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헌법재판관들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습격하겠다라는 극우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국가테러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비상계엄 이후에 혹시 테러대책위가 열린 적은 있나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아마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김현정 위원** 아, 국무조정실의 소관……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예.

○**김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제 소관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단히, 거의 국가의 기강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보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실에서 테러대책위 이것을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최상급 권한대행에게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우선 테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동대를 24시간 배치를 해서 그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테러냐 아니냐고 여쭤보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테러법이라든가 관련되는 매뉴얼에 대해서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테러방지법의 테러 정의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능 저하는 테러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라든지 등등 협의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한기정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작년에 벌어졌던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해외 계열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호·순환 출자 이슈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공정거래법상 재벌 순환출자 규제에 루프홀(loophole)이 생겼다, 그러니까 큰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기업들 간에도 있고 이 규제상의 구멍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자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SMC를 통한 순환출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명시된 탈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그제 간담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2014년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이후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완성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없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첫 케이스입니다.

○**강명구 위원** 이런 사례가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공정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향후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또는 탈법적인 상호출자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위에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영권 분쟁은 두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분쟁 과정에서 생긴 규제상 큰

구멍이 생겼다든가 또 대기업 규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공정위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강명구 위원**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제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게 뭐냐면 파출소 한 서너 곳을 묶어 가지고 통합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에다가 중심관서로 지정하고 또 치안 수요가 조금 부족한 곳은 공동체관서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파출소 서너 곳을 묶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구미 지역이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심지역관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래요.

이 중심지역관서제 도입하면 지역 순찰 강화한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우리 농촌 지역이지요—112 신고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도 문 닫고요 상주하는 인력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 간 먼 거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출동 시간이 늦어 가지고 초동 대응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요.

지금 청원서가 올라오고 있고 저희 의원실로 흔히 말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시범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역 여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충분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시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중심지역관서의 운영 현황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치안 공백, 불안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보고받은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좀 더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건데요. 구미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오후에 저거 있어 가지고 좀……

○**위원장 윤한홍** 오후에 질문 안 하실 거예요?

○**강명구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시간 조금 더 드리세요.

○**강명구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부가가치세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주장인데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역시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언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불필요한 도발이다’라고 언급했고 또 ‘미국 무역법 301조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보복

조치도 강구하겠다.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적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 관계의 새로운 위협이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불필요한 도발이라든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 새로운 위협이 된다 이런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갈등은 없도록 미국과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미국과 소통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국의 차원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지금 매우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 저희도 잘 고려하고 있고요. 산업부 등 관계 부처하고 잘 협조해서 통상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 규제가 계속될 경우에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미국 측과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통을 더 확대해서 미국 측과 원만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지난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4년 만에 3.4배 급증한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치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만약에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듣다면 애꿎은 우리 수출 기업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플랫폼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익에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까 봐 걱정이 되는 바고요.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보다 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하신 국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강명구 위원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통상 이슈를 제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입수를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They can't discriminate against us', 그러니까 우리를 EU나 이런 데가 차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

금 답변을 한 거거든요. 보통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EU에 있는 다른 기업과 차별해서 규제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만들면 통상 이슈를 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표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 보시면, 독과점 플랫폼 입법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띠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낸 그 내용들이 EU 같은 경우는 디지털시장 경쟁 촉진법 해 가지고 2023년에 시행을 했고 독일, 영국, 일본 등 이런 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요?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을 사전에 그런 정량적 기준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멀티호밍 이런 거 하면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시장경쟁 침해한 거로 추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에서 우리 공정거래법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인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모든 국가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데요.

○**김남근 위원** 주요 국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EU나 독일…… EU는 독일, 프랑스 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특별히 한국만 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한국만 특별히 무슨 미국의 빅테크들을 규제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국만의 통상 이슈가 될 이런 사안은 아닌 것인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가 특정 국가를 차별해서 그 법 적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 보시면, 미국도 보게 되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계일 슬레이터인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왔던 사람인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 중에 빅테크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억압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래서 이런 독과점 남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계일 장관 지휘 아래 계속될 거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장관도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퀄컴 같은 회사도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상현실 기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퀄컴 같은 회사들이 그런 기기 운영체계에 대한 반도체 칩 같은 걸 만들기 어려우니까 플랫폼의 그런 식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들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었지요. EU에 그런 의견서도 보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과점 규제법이 시행이 되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과점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앱마켓에서도 수수료 인하하고 다른 결제수단 같은 거 연결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요.

원스토어한테 물어보니까 원스토어가 유럽하고 일본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애플이 독과점을 완화하니까 원스토어와 같은 우리 토종 앱마켓도 해외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웹브라우저도 생겼어요. 그다음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운영체계, 가상현실 기기에 있어서의 운영체계를 만들 때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이렇게 만들었지요, 독과점 피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독과점 규제법의 어떤 효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기기들의 호환성도 높아지고 있고 독과점 남용 행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 맨 끝의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계속 주저주저하고 또 요즘에 일부 언론에서 통상 이슈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주저주저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독과점 규제법을 시행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적인 이런 보편적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통상 환경은 지금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통상 당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 국내 통상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이미 법안도 냈잖아요.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안을 냈으면……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정부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근 위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지요. 강민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정부와 협의해서 낸 거지. 논의를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책임 있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통상 문제는 저희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이슈여서 저희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고민 좀 하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김병기 위원** 저는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러면요?

○**김병기 위원** 요즘 회자되고 있는 블랙요원 출신 홍장원 1차장을 선발한 당사자기도 합니다. 블랙요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현지에서 비익성 또는 비노출 간첩 활동을 위해서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동료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현지에 버려지기도 하고 어디에 묻혀 있는 거, 물론 저희가 나중에 수습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은 현충원에도 묻히지 못하지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블랙요원들과 접촉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용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소위 국가가 망해서 현지에 망명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군들의, 독립투사들의 꿈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저는 블랙요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했을 겁니다. 독립된 산하에서 정말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국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칩시다. 그분의 국적이 중국 국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장관님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어쨌든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당연합니다.

○**김병기 위원** 하지만 많은 일부의 분들이 중국 국적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훈부장관님께서 나서서 이런 걸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의 평화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저희가 영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가가 굉장히 누란의 위기에 처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극복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다하지 못할 망정 정말 조롱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정말 소박한 꿈, 자기의 국적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을 저는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부장관님께 부탁드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기 전에, 보훈부장관 아니시겠어요? 보훈부장관님께서 딱 나서셔서 ‘그것은 분명히 틀렸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병기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국회에 온 중에 가장 존경하는 위원님 답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회 예결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힌 적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님이라든지 다른 질문에서 여러 논란이 많이 나올 때마다 거듭 저희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언론매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논란이 가중이 되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1910년 이후의 모든 것은 무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었다고 정부는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민과 공직자라고 하면 더더욱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결같이 답변을 해 드린 건데 오늘은 국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비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보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기념공원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6개국 유엔 참전국에서 정말 코리아라는 이름도 모르는 이국 만리에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펴 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돌아 가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묻혀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재판관이 부산에 근무할 때 유엔기념 공원을 방문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는 보지는 못했고……

○강민국 위원 문형배 재판관이 이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문맥 그대로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침략군이라는 이런 어조로 보이거든요. 역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 과정에서 국내외의 종북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북침론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교파서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심지어 러시아 교파서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소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에 대해 북침론 같은 왜곡된 사고를 지녔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개탄치 않을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0년 9월에 작성한 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성한 글의 의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훈부장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강민국 위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리고 6·25전쟁에서……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달에 우리가 제복을 입은 자들에 대한 예우, 제복에 대한 예우 때문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소방 공무원까지도 우리가 확장을 했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강민국 위원 지금도 안장 대상은 아니지만 안장 희망 공무원 직군으로 장기 재직 교정직 공무원 그리고 40년 이상 장기 재직 군무원 또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위 직군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보훈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되면 안장될 수 있게 안장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반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 못지않게 안장 대상자

제외 범위 역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몇 군인들의 작태를 보면 이런 양반들이 군인이냐 할 정도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중요 보안사항인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 위치 노출에 수도방위사령부 B1 병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까지 줄줄이 말하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의원의 생중계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은 채로 울먹이면서 당시의 작전상황을 발설하는 군인이 있어요. 그런 양반이 장군이라고 예우를 받는데, 그것도 그냥 장군도 아니고 특수전사령관이에요, 꽉종근 사령관. 이게 도대체……

사실 저희들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그 군복 자체가 바로 수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전투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을, 예우를 해 주고 하는 건데 정치인 유튜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는 이런 분을 예우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분 군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 또 제복 관련돼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럴까요, 예.

○**강민국 위원** 장관님, 이런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 군인 정신까지 결핍된, 어떻게 출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별까지 달아 가지고, 제가 볼 때 똥별이에요, 똥별. 이런 군인까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에 대해서 단순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국훈장을 수여하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강민국 위원** 보국수훈자 예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군복을, 수의와 같은 그런 존엄성 있는 직군에 있는 분들이…… 또 사실은 군인들이 예우받을 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국립현충원, 호국원, 급여, 군인들의 복지가 얼마나 많아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 그 정도만 예우해 줘 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뒷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안장 대상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십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법에 의해서 영예성 훠손, 다시 말씀드리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안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군인들과 해당되는 분들이 법률에 의거해서 징역을 받았다든지 금고를 받았다든지 하면 안장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교정직이나 군무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장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이나 공헌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받쳐 줘야 또 법률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립묘지 조성 취지라든지 다른 안장 대상자와의 형평성, 국민의 공감대, 안장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권익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전에 반가운 인사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국가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자화자찬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말씀드렸습니다.

○**한창민 위원** 1점이 오르면 1인당 GDP가 2.64% 상승한다는 경제성장의 기여도까지도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땠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조사 종결하면서, 무혐의 종결하면서 부패방지국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판결들을 내면서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논란들이 이어졌는데 자화자찬이 나옵니까? 오히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죄송하다, 올해는 심기일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태도 아니에요? 무슨 지금 경제 성장을 까지 이야기하면서 자화자찬하십니까. 권익위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란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일말의 책임도 못 느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있으셔야지요. 뭐 하는 것입니까?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어쨌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민 위원** 자화자찬할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래도……

○**한창민 위원** 거기다가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민생이 파탄되고 있는데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으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권익위가 잘해 가지고 국가청렴도가 올랐고 경제성장률, GDP가 2.64% 오를 것이다, 기대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객관적인 팩트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창민 위원** 팩트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느냐고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면 부끄러움은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 서울특별시 CCTV 영상정보가 군부대에 대거 노출된 것 아시지요?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 한창민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2월 3~4일 동안만 779건이에요. 수도방위사령부 96, 52사단 46 그다음에 56사단은 127, 특수전사령부는 무려 509건. 이것도 아마 사실 확인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상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봤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여기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는 개보위 결정에 의거해 가지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어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 수방사, 52사단 그다음에 56사단, 특전사, 민방위에 총 22개 권한을 줘 가지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전 자료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1월 달은 4600번, 2월 달은 2900번, 5월 달에는 7900번, 7월 달은 9000번,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아십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지금 이 표는 처음 보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랑……

○ 한창민 위원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내부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 한창민 위원 그런데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이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문제고 서울시에서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떠넘겨 가지고……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운영 상황이 지금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창민 위원 오늘 딥시크 문제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전에 조치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고민해 가지고 빠르게 조치하거나 이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번 내란 사태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실제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지 훈련 상황인지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지 이런 것을 일일이 건별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한창민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 이후에 사후 점검이라도 했냐는 말씀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이게 12월 3~4일, 707이 국회 주변을 열람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 구성 후 테스트’라고 쓰여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유를

써 놓은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써 놨습니다, 대부분. 열람의 이유조차도 바람직하게 써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지금까지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계셨잖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떠넘길 일이냐고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놓고 누구든지, 22명이 언제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나 아니면 다른 이유 적어 놓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인정보 무방비 상태예요. 계엄이 일어나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관심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말씀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개선 방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개선책을 마련해야지요.

○**한창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기본적인 개인정보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하셔야지요. 이게 단순하게 서울시하고 업무 협조 차원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됩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랐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고학수 위원장님, 금방 비상계엄 중에 707특임단에서 국회 주변을 열람한 것 그리고 그 사유를 테스트한다고 한 것, 이것 사유가 거짓이잖아요. 사유 거짓이 명확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 부분은……

○**민병덕 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 개보법 위반 아니에요? 이런 그릇된 사유를 가지고 계엄 중에 또 계엄 직전에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는 테스트라고 적어 놨어요. 이것 개보법 위반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 보겠고요.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심각한 건데 개보위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세요.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 민병덕 위원 유철환 위원장님, 아까 인사말에 보니까 ‘신고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차이 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공익신고자 얘기하시는 거지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 민병덕 위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공익신고자입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현재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를 했습니다.

○ 민병덕 위원 뭘 말입니까?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제출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출받아서 저희가 공수처와 대검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 민병덕 위원 뭘 송부합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내란 관련……

○ 민병덕 위원 받아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계엄 관련, 내란 관련 그런 걸 다 송부를 했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뭘 송부하냐고요.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판단하지 않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공익신고로 저희가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겁니다.

○ 민병덕 위원 아, 판단한 겁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 민병덕 위원 전원위원회를 여셨나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렇게 처리됐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 민병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신청은 없었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러면 신청이 있어야지만 보호조치를 하나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은 보호조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보호조치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민병덕 위원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이 공익신고만 하면 자기 보호되는 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호조치 신청이라는 걸 해야지만 보호조치 논의한다고 안내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분이 알고 계시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민병덕 위원 아니, 그래서 공익신고 했고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검찰이랑 수사기관에 보냈다면서요. 그런데 공익신고를 하는 목적은 보호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보호

조치 신청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안내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안내문은 저희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시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때 보호조치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책임감면 의견서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좋습니다.

과종근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인데 이 공익신고가 회유에 의해서 됐다거나 하면서 이 공익신고자를 지금 여기저기서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공익신고 그 자체가 본인은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회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이것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하고 신변보호라든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난이요 ‘공익신고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누구한테 사주받고 한 거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없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건 더……

○**민병덕 위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장관 누군지 알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군 복무 의혹, 자녀 군 복무 의혹 관련해서 당직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신고자가 아니었어요. 수사 협조자였어요. 이때 수사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보호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수사 협조자라서 보호했습니다. 지금 내란에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가장 큰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내란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내란으로 지금……

○**민병덕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말,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권익위에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로 다 인정했다면서.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부분은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신고 보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민병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히려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익위에서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천명을 해야지 양심선언 하는 사람이라도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꽤종근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가 더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달 31일 날 배달의민족이 설 연휴 직후 발표한 서비스 개편안 내용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정문 위원 그런데 이 서비스 변경 내용을 보니 우려가 좀 큩니다. 대외적으로는 마치 지난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받았던 내용을 개선했다든지 또는 업주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UI 등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민이 또 배민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안의 가장 큰 내용은 기존 배민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나뉘어져 있던 배달 방식을 통합하고 정액제였던 울트라콜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략 내용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정문 위원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이 이미지는 배달의민족이 자체적으로 소속 기사를 보내는 배민배달인 음식 배달과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대행사를 쓰는 가게배달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UI 개편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 뒤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만 보시면 위원장님께서는 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 중 어느 것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료가 싸고 더 빨리 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지요? 즉 이와 같은 가게 통합은 겉보기에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업주들의 운영 편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저는 배민배달을 극대화하는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민의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하다 보면 결국 배민배달에 비해서 배달 팀이 비싸

고 오래 걸리는 가게배달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민 입장에서는 자체 라이더로 배달하는 배민배달이 중개수수료에 더해서 배달 텁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민배달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러한 UI 개편이 가게배달 폐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 저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배민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개편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결국 가게 입장에서는 배민배달만 남으면 수수료 부담이 증가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트라콜 광고 상품 폐지인데요. 울트라콜은 깃발 1개당 월 8만 8000원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정문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없이 결제수수료 3.3%만 내면 원하는 만큼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깃발 꽂기가 소상공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깃발 1개만 꽂고도, 최소한의 수수료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게 사실인데 이러한 업장들도 다 결국에는 울트라콜 광고 상품을 폐지하게 되면 정률제 상품으로 강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울트라콜이 폐지되면 점주들은 정률제 기반의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점주께서는 중개수수료 6.8%, 결제수수료 1.4~3.3%, 부가세 0.68%를 부담해서 결국 기존의 3.3% 수수료만 내면 됐던 것을 최대 10.7%까지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일부 업주께서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광고비가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그동안 이어 오던 여러 수수료 체계를 배민 측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현재 배달의민족 관련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살펴봐야 된다 보고요.

또 한번 살펴볼 것이 이번 개편으로 라이더 정책 변경도 공지됐다고 하는데요. 배달료 체계 개편으로 기본 배달료가 500원이 삭감됐는데 결국 건당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었던 바로배달을 폐지하고 구간배달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료가 2500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500원 정도가 더 삭감이 된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배달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결국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마치 이런 배달앱 개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주와 상생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서 다른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살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안 하는 대신에 3분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그리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전에 아마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LTV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년간 조사를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재심사 결정을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것 재심사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심사보고서 그리고 의견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때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새로 부각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새로운 쟁점이 어떤 거였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柳榮夏 위원** 좀 그렇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왜냐하면 재조사 사항이어서……

○**柳榮夏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국제카르텔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조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원래 국제카르텔조사과는 글로벌 기업의 담합을 조사하는 그런 과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연히 보면 지금 해외 빅테크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감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도표에 보이다시피 2021년도에 부과된 과징금이 2649억인데요 작년 2024년 1억 95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과가 국제카르텔과인데 이 과가 지금 다른 테, 다른 국내 기업의 담합에 투입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LTV 담합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항상 조사나 수사나 마찬가지로 과잉 수사, 과잉 조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이 오전에 답변하셨듯이 과소 규제도 안 되지만 저는 지나친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조사해서 빠른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오늘 공정위에 질문이 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업비트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업비트 화면 좀 띄워 보십시오.

공정거래법 6조에 보면 특정 시장에서 단일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 점유율이 있으면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규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2%입니다. 두 번째 빗썸이에요, 19.3%고요. 나머지 코인원이나 코빗, 고팍스는 다 합쳐서 2.5% 정도,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업비트가 차지하는 포션이 큰데요.

위원장님, 작년 7월 19일 날 기억하실 겁니다. 업비트가 예치금 이용료를 처음에 1.3%로 공지했다가 다른 거래소가 조금 더 높은 요율을 발표하니까 바로 2시간 만에 2.1%로 기습 인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FIU가 업비트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이행 관련해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래서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현재 진행된 조사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행된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柳榮夏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柳榮夏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사가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업비트 문제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화면 좀 보실까요. 작년에 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총 57건인데 그중에 23건인 40%가 업비트 관련인데 이것도 문제지만 합의 사항을 보면요 업비트가 미합의율이 6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업비트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업비트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SM그룹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SM그룹은 알다시피 지난 2월 10일 날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SM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삼환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각종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게 오비 이락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생 분이 SM그룹의 해운 계열사인 KLC에 근무했었고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동생도 관련 계열사인 삼환기업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부당내부거래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지금 조사 중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지난 임시 주총 전에 고려아연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매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영풍과 MBK 연합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柳榮夏 위원** 화면 잠깐 보실까요. 저것을 좀 봐 주시지요. 반도체 황산 공급 현황을 좀 띠워 보세요.

MBK파트너스는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홍콩을 거점으로 하던 글로벌 사모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회사고요. 지난번에 홈플러스 인수해 가지고 자산 회수 전략을 할 때 빠르게 회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柳榮夏 위원** 문제는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게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겁니다. 비철금속과 이차전지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고려아연 연간 23만t 황산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95%가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와 SK에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5%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전략산업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외국의 사모펀드가 개입되게 되면 저는 이게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남은 시간은 권익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안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닙니다.

화면 잠깐 띠워 보십시오.

권익위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리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 독립기관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권익위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 가치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柳榮夏 위원** 이게 권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화면을 좀 띄워 보실까요, 성명서 화면.

보시지요. 이게 12월 6일 날 권익위의 상임위원 한 분과 비상임위원 세 분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윤 대통령 헌법 위반, 국민 이름으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권익위 위원들이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 거거든요.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한삼석 상임위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 절차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지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징계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공무원입니다. 물론 비상임위원들은 권익위법에 따라서 신분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삼석 위원은 일반적 고위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납득할 결과를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저도 3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신장식 위원** 보충 없이 3분 더 쓰는 것으로……

○**위원장 윤한홍** 예, 그러면 8분 드리세요.

○**신장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신장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 보시면, 인사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구심점이 되어 분야별로 현안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국정 총괄·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 전담 보좌기구를 꾸렸습니다. 6개 팀 중에 재난치안팀만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정책팀장 이분 가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재부 관리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국정 총괄하고 업무 조정하려 국무조정실로 가야 됩니까, 기재부로 가야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보면 국무총리직무대행이 기도 해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갑자기 행정명령 내려 가지고 예규 만들어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원단 만들어서 대통령실 역할을 하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 계통상 있는 국무조정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저희 국무조정실하고 기획재정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낸 것은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비서실 역할을 해야 되는 업무들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거기에 나가 있는, 임명이 되신 분들 대부분 보면 현재 보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직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꾸리면서 저희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총리직무대행이라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직무대행이기도 해요. 도대체 국무조정실을 패스해 버리고 기재부에다가 막 뛸 만들어, 행정 예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저는 그래서 국정 총괄·조정 업무를 그런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본연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 어디 가서 이것 국정 협의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잘 보좌하셔야 되는데, 보좌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정 운영 적극 지원.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신장식 위원**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는 인사 알박기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연말, 연초에 인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행하라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눈에 띠는 인사 뭐 했나? 경찰조직 인사했지요? 이것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내란국조특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중간에 매개가 되어서 용산발 서울구치소 인사가 일어났다, 서울청을 친윤 경찰들로 장악해서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윤석열 과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왔어요.

설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오비이락이라고 딱 보이기 좋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인사 하지 못하도록 직언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합

니까,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합니까? 인사 검증도 이상한데 인사 알박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완화 알박기 하고 계세요. 규제완화 등 통해서 1/4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 규제완화 이것 왜 지금 권한대행이 하십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초나 중순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알박기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하면서 반도체법, 52시간은 원래 반도체법 처음에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칩스 법 대응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중심으로 되어 있던 법에 갑자기 최상목 대행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 52시간 얘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1/4분기 중 집 중 추진해 달라, 규제완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위 법령 개정 알박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0 건 이상 빨굴하고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이행에 속도감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탄핵심판 결정이 3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들한테 자기 브랜드 하위 법령을 만들래요. 지금 11명의 내란 국무회의 참여했던 분들은 실은 전부 다 사표 내셨던 분들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 왜 갑자기 장관들 브랜드 만들라고 다그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서 해야 될 일은 민생 추경이라고 저는 첫 번째 봅니다. 가계부채 대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란극복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지급 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민생경제의 실질적 대책이 담긴 추경, 2월 내에 국무조정실이 총괄해서 안을 마련해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정부조직법상 본인들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사 알박기, 규제완화 알박기, 하위 법령 알박기…… 도대체 장관 핵심 브랜드 100가지가 뭡니까, 지금 이 판국에? 장관들 나중에 선거 나갈 때 브랜드 하나씩 붙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업무를,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도록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신장식 위원** 네이버 관련 조작 기사,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 시인. 청탁받고 기사 숨겼다’, 박동희 기자라고 폭로를 했어요. 네이버 사장이 사과문도 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신장식 위원** 그리고 네이버스포츠 제휴 약관 제19조 2항, 빨간색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말하자면 ‘제휴평가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불공정 약관이라고 했고 그래서 23년 10월 16일 날, 한기정 위원장님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약관이 있다. 이것 문제다’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불공정 약관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년 반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요. 24년……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것……

○**신장식 위원** 잠깐, 마지막 표 보세요.

알리·데무, 결혼준비 대행업체, 중고차 대출업체 위탁계약, 웹툰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이런 것 전부 다 조사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 불공정 약관은 489일째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눈치 보기 아니냐, 네이버가 공정위에 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신장식 위원** 류희림 이것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류희림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다,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류희림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제대로, 사적 이해관계자여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들한테 방심위에서 인적 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송부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송부를 했던 것입니다.

○**신장식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보고한 문건 권익위원회에 2023년 9월 14일 날 제출됐어요, 안 됐어요? 뭘 몰라요? 뭘 몰라, 서류가 이미 제출됐는데? 이 서류는 뭐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신장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 서류 제출됐어요? 위원장님 보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서류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전원위에서 결의를 하긴 한 건데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전원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전원위에서 ‘다 같이 도둑질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합법이 됩니까?

○**위원장 윤한홍** 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계속 전원위, 전원위 평계를 대시잖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관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중단했고 그 이후에 해당 약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새로운 제평위 출범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약관상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네이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장식 위원** 489일째요? 다른 데는 2~3개월 만에 다 끝났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각하하겠다는지 뭔가 결론을 내리셔

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도 없이 489일을 그대로 둘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상혁 위원 적용됐던 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적용됐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적용 안 되니까 그때 적용됐던 사례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전의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홍 권익위원장님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그렇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되는 겁니다. 답을 우물쭈물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아니,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왜 우물쭈물해요? 그러면 옆의 우리가 봐도 ‘이게 뭔가 일을 잘 못했구나’ 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답변하셔야지.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신장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추경 관련된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국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논의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규제완화와 하위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에 관해서는 일단 기재부에서 그 TF를 만든 것은 기재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교 파트라든가 안전 파트라든가 또 사회 분야도 좀 약점이 있고 정무 분야 그다음에 공보 분야 이런 쪽에 굉장히 사실은 그런 조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 국무조정실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재부 부총리의, 아무리 권한대행이고 직무대행이시지만 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포트해 드릴 것은 서포트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일종의 비서실이지요—비서실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와 똑같이 권한대행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인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1급 이하의 인사는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석이 있는 것들을 만약에 비워 두고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경찰청이 차장이 청장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서울청장을 서울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치안에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하고 하위 법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생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통과해서 뭘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국민들의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다들 12월 3일 이후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2월 3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서 우리 상임위에 나와 계시는 피감기관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권익위원장님이셨어요.

권익위원장님은 이번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권익위가 어떤 역할들을 그동안 충실히 잘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의 입장은 뭐 지금 현재와 법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니까요.

○박상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대학 동기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건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대학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탄핵 청구를 당하고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를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명백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청렴도가 올라가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 1.3% 됩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런 것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 승리의 이른바 끝판왕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걸 보신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조실장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조실장님은 비상계엄이 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짧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많이 놀랐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현실 가능성에 없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뭐 맞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사실 그랬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댔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하고는 주례회동 비슷한 것을 계속적으로 가져 오셨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그리고 그 의제를 담당하는 게 국조실이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혹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국조실에서 의제로 해서 주례회동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장…… 보면 비서실도 있습니다만 내각과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총리하고도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 부정선거를 유튜버들 주장만 믿고 이렇게, 심지어 45년 만에 불법적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국감에도 대남 오물 풍선하고 소음 문제 관련해서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해서 보니까 10월 16일 날 관계 기관 회의도 국조실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들, 안보 문제에 걱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부가 부인하는 사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군이 직접 살포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결국 외환죄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거기서 안보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문민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련해서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점검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테러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건 몇 번 질의를…… 이재명 대표 건 범인이 드디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테러 지정 여부 논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국정원에서 그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이재명 대표 테러 건이 그 당시에 국조실이 자꾸 국정원 얘기 들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끝까지 미루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난동·폭동이나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거의 테러 수준, 심지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좀 단호하게 했어야 이런 문제들이 막아졌을 텐데 그런 문제들 관련되어서 위원장님께서는 당당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의 법 집행을 당당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조정실장,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동수 위원** 한기정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고려아연-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2013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사례가 발생했지요?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 유동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를 통해서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상법 제369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을 통해서 일단은 경영권 방어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저는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 둘간은 차치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호출자제한 금지를 국내 회사로 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 이 부분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내고 공정거래법을 우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법에는 사실 이 부차적인 조항으로 369조에 국내나 해외 기업 따지지 않고 지분·지배력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두 법 간의 어떤 충돌이 부분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지금 이 공정거래법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 제도는 국내에서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법 369조는 그 입법취지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개가 딱 같이 연동될 필요는 없다라

고 생각이 되고요.

○**유동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그 법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상법에 의결권 제한 같은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법은 차치하고라도 해외 법인을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금지한 부분들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정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

○**유동수 위원** 질문이 세 가지가 돼 가지고 다 듣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배달앱 수수료 문제 지적하면서 공정거래법 제5조에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 부분은 금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유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동수 위원** 현재 용역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유동수 위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일단 4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이 되어 있고요.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또 하나 지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배달앱 수수료가 소비자 이익 저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달앱에 가격, 매출 등 사업자의 경영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계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도 적극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취·남용에 해당하는 저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용역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 내용……

○**유동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저한테 ‘이것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국감 때 답변 내용과 지금 저한테 서면답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오후 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주시지요. 3분 정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인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 전체 원화 기준 거래 규모가 2433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2000조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가 2600조 정도 되는데, 코인

거래소가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2월 13일 기준으로 거래 점유율로 보면 업비트가 한 65% 되고 빗썸이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 사태 때 보면 이게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이때 보니까 업비트가 99분간 사고 발생하고 빗썸도 62분간, 여기에 손해 본 이용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그래서 코인거래소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이 분명히 발생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동수 위원** 그래서 당국에서 나서서 거래소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금융위랑 같이 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가상자산거래소 관련해서 경쟁 상황, 시장 분석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시장 조사와 관련된 제 지난 발언과 서면답변이 다르게 나간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한번 보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국외 계열회사에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원래 그 입법취지 자체가 국내 지배력 확장 문제고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 소유한 회사라든지 지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방기선 실장님, 지금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자동차 관세 25%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현재 관계 부처에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얘기를, 그때그때 계속 피스밀 (piecemeal)로 미국에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부차관 중심으로 해서 회의체를 돌리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아웃리치(outreach)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현재 저희가 여러모로 대행 체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최근에 국무장관을 만나셨고 그다음에 산업부 차관보가 나가서 현재 미국에서 생각하는 비관세 장

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와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의와 수출전략 회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피스밀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상하 전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작년도 우리 수출액을 보니까 원화 기준으로 한 1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자동차 수출이 한 100조 정도 되고요 자동차 수출의 50조 정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대수는 한 5조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체 자동차 마켓셰어(market share)가 그쪽의 한 10배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심각한 무역역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봐도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에 우리가 여덟 번째로 60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6838억 불 수출 중에서 518억이 무역흑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601억의 흑자니까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런데 저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그쪽 미국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재 수입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한국이 굉장히 미국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질의에 좀 앞서서, 혹시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박찬수 예.

○강준현 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환경연구원장 이창훈 예.

○위원장 윤한홍 마이크대로 나오게 할까요?

○강준현 위원 예, 좀 이따가.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장님 계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영찬 예.

○강준현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이후로 저희 대한민국은 요즘에 국가 대개조 또 사회 대개혁, 국토 대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이 저희 국회나 또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을 잘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나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방기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신동천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요즘에 예산 분야 등등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예.

○**강준현 위원** 그동안에 제가 좀 관심을 덜 갖고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소관 연구기관들이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산하에 연구원이 몇 개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24개의 연구기관과 2개의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박찬수 부원장님,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23년도 대비해서 약 44%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44% 재작년에 비해 삭감되었습니다.

○**강준현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박찬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기본 사업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중장기 미션 달성을 위한 흔히 기관 고유사업이라고 부르는 재원입니다. 이번에 대폭 삭감됨으로써 저희는 과제 수량 과제당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수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에 대한 연구나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를 제공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창훈 원장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 비율 적용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적용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환경연구원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게다가 또 연구원 경상운영비까지 매년 5% 삭감을 했고요.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환경연구원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강준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국환경연구원장 이창훈** 저희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국가 싱크탱크로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봉제 기관이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 승급분이 따로 추가로 책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호봉 승급분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1% 내

외의 추가 상승분을 저희들이 지급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삭감이 됐고요.

경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5%씩 삭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5%가 과거에는 통상적으로는 비경직성 경비, 저희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상비가 한 30억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80%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고 20%가 비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비경직성 경비의 5%를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는 전체 경상비의 5%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경직성 경비로 환원을 하면 25%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환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관 운영에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 문제……

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시간 더 드리세요.

○**강준현 위원** 예산 문제가 이게 곧바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사업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족이 되면 기관 살림은 더 어려워질 테고 또 인재 유출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다가 인건비 충당하려고 수탁과제 비중이 높아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탁과제. 기본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수탁과제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역량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그렇습니다. 인건비 충당 등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과제 연구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국가 대개조 말씀드렸고 사회 대개혁 말씀드렸고 국토 대개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인사 산하 연구원분들이 다 하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김영찬 원장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OECD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영찬** 예.

○**강준현 위원** 제 지역구의 조치원 보면 약 52%, 집중도가 높거든요. 혹시 그동안 연구과제 중에 이거를 해결할 어떤 보완책, 해결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영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통사고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조치원읍 같은 도농복합 지역들의 교통사고가 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내에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이면 생활권 교차로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교차로에 통행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그런 교차로에 굳이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표지판만 설치해서 운영해도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일본에서 표지 교차로라고 해 가지고 과거 표지 교차로 사업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30% 줄인 결과가 있고, 그 이후로 일본이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하셨으니 조치원읍에 표지 교차로 시범 사업이라는 걸 정해서 표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는 걸 우리 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에서 효과를, 성과를 보면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준현 위원** 고맙습니다.

저 1분만 마무리 할게요.

지금 세 기관만 나오셨는데 방기선 실장님, 아까 24개 기관이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24개 기관에서 제가 볼 때는 각 부처의 수탁과제도 할 거고 또 기본 연구도 할 거고 등등인데 이분들이 좀 충실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김형석 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 국정감사 때 제가 또 질의를 했었거든요. 자료제출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발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그거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정확하게 뜻이 전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준현 위원** 지금 후회 안 하시냐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 당시 상황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준현 위원** 고발해도 좋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이제 좀 많이 달라졌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 언론들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나 또 이사님들에게……

○**강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고려할게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딥시크 국내 서비스 중단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위원장 윤한홍 지금 AI 활용 문제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문제가 양립하는, 경합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AI 기술개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지금 딥시크 서비스 중단한 게 우리 개인정보가,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판단한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중국에.....

○위원장 윤한홍 아니, 짧게 답변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중국 자체보다는 투명성이 없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금 자료에는 중국에 유출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121만 명 국내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용이 중단된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렇지는 않고요. 앱 신규 다운로드가 지금 중단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딥시크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중국 사법 당국에 정보 제공 가능’ 문구를 추가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딥시크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중국의 틱톡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러니까 딥시크로 가는 정보가 있고 틱톡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간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결국은 유출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유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저는 지금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짚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170명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지금 업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업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 보니까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다 찍어서 해킹을 하면 중국에다 유출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집의 개인 사생활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증제도를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중국산 IP 캠 해킹.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IP 카메라 이슈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가 중국에 유출된 사례, 이미 나왔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알리페이 쪽으로 가서.....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저가 상품이, 공산품이 국내에 엄청 들어오는데 거기에 전부 지금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수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전기차도 국내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딥시크를 다 탑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BYD 회사.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BYD?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우리가 수출할 때도 거기에 우리가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프트웨어나 칩을 꽂아서 수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거는 그 현지 법에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도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중국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왜 그럴까? 그러면 중국산이 한국에만 그렇게 하느냐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래서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것도 저희가 기술 분석을 하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중국 공안 당국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량이 아직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를 그냥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저는 초기에 같이 해 줘야 된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또는 사생활이 다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니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대통령도 탄핵이 돼 있고 국무총리도 탄핵이 돼 있고 권한대행에 대행, 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인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정실장이 말씀 주셨듯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있고 못 하는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할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민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지금 또 서비스 개편을 소비자라든지 자영업자보다는 자기들 위주로 개편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가 대처나 조치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고 있고요. 배민 관련 조사된 사건들 아마 곧 안전 상정이라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답변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수료나 요금 다 받으면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지금도 뭔가 조치가 됐다는 말은 내가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공직기강 문제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일이 잘 안 된다.

공직 기강은 국무조정실 소관이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 문제도 공정위가 정무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민국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통상 압력이 불거져서 산업부가 협조 요청을 한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조금 신중하게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위하고 산업부하고 미국 동향을 잘 체크하셔서 그 판단을 신속히 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마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공정위에다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검색 분야도 있고 쇼핑 분야도 있고 OTT 분야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이 80%, 90%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구글보다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가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 온라인 플랫폼이 없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가서 장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글이, 아마존이 국내에서는 힘을 잘 못 쓴다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좀……

그런데 자료가 2년 전, 3년 전 자료에다가 자료 통계가 없어요, 공정위에.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일단은 그 정도 하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셔서 많이 빠졌는데 보충질의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보충질의 제일 첫 번인데 하실 수 있습니까?

○김용만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김상훈 위원님 안 하시는 겁니까?

○김상훈 위원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김용만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윤한홍 위원장님께서도 ‘공직 기강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일이 잘 안 굴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국무조정실의 행정 공백 같은 문제가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여쭙는 이유가 광복 80주년 사업 관련해서 대통령령 만들고 기념사업추진위를 꾸려 가지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지금 위원회가 출범했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직 출범 못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8월 15일 광복절까지 6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지요. 않아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80주년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기본계획이 안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예산도 제법 편성을 해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280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이게 25년뿐만이 아니고 24년에도 3억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행정이 좀 미진하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고 또 개별 보고로 의원실로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꾸려져서 12월, 그러니까 24년 12월부터 25년 2월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3개월씩 뒤로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조금 밀린 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밀렸는데, 저희가 70주년 때도 보면 위원회가 3월 달에 발족을 했거든요. 저희가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이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윤한홍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인사를 해야 할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 혹시 국무총리께서 지금 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직 못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도 빨리 위촉을 하셔야 되고, 이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찌 됐든 이게 대국민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는 됐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보고는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으로 좀 돌아갈까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오전에 얘기를 쭉 들어 보면 결국은 백범 김구는 대한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앞쪽의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장관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당연히 국적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답변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끝나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하시게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의 부처를 담당하시는 장관님으로서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국민이냐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방법도……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자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의 딜리버리에 있어서는 좀 간결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에 대해서 오후까지 내용 파악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장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는 해당 상장에 대해서 포상을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 상장실이라고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당연히 대통령 표창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뉴스를 접하고 행안부에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언론 매체에 계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주무 부처 행안부는 별도의 설명자료 배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 제가 무슨 상황인지 그건 이미 다 파악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의 가치를 이 내란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강경하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기관도 침탈당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이름을 써 가지고 마치 보훈부가 상장을 한 것같이 공문서 위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사기죄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우스운 꼴이 돼 가고 있는데 그냥 ‘행안부가 상장을 주는 것이다. 보훈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보훈부의 이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실로 폴로 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리고 아까 그것 오해라는 부분에 대한 것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말씀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주무 부처 국가보훈부로서 정부라든지 다른 곳의 눈치 보는 적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도 국가보훈부 법령과 국가보훈부가 해야 하는 입장만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우선 간단하게……

오전의 질의에서 ‘절차적인 흡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체적 흡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계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게 실체성일 텐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체적인 흡결과 관련해서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사후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님,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에서 등장한 어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저렴하다는 광고가 있는 것이, 사실상 알뜰폰보다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가 더 싼 이 경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른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PPT 보시면, 그것보다도 저는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여섯 가지를 다 가입하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고 그 뒤의 PPT 보시면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열네 번째 쪽 PPT 보시면 제가 아무리 산수 능력이 부족해도…… 페스트모바일 4.2만 원, 선교카드 월 4400원 추정, 자유일보 구독료 2만 원, 자유마을은 자체 수익모델은 없고, 광화문ON 8만 8000원, 그러니까 1인당 이커머스 평균 결제 금액 이런 것들 다 해 보고 ‘너 알아TV’ 이런 등등 해서 나오는 액수들 이런 걸 다 해 봐야 1인당 1개월 매출은 15만

4400원 수준 이렇게…… 뭐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100만 원하고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제3의 국민연금 설립안 이런 것과 관련돼서까지 나간다면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나 정치의 자유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 PPT 마저 띄우면, 저는 이렇게 근거가 좀 부족하게, 산출 근거가 부족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되다 보면 다른 한편에서 알뜰폰 영업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관리되겠나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관심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영업 행위나 등등이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겠나 이런 의심은 듭니다. 그런 점들도 아울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아까 100만 원 경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앞에 강준현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익위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권익위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특히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가지고 돌아가신 김 국장님의 유서라고 착각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허위 중언·감정 혹은 국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한 후속 처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권익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진을 보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유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김 국장의 유서라고 착각할 만한 이런 자료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준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했거든요. 이 점을 확인해 가지고 마저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말씀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지금이라도 권익위원장이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1분만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 짧게, 1분만 넣어 주시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어제 보니까 부산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는 그분이 출마

하는 거야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위법한 것으로 또 국정감사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부산시 교육감을 나가게 됐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무위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결국 그로 인해서 권익위도 조직의 큰 명예, 조직에 큰 흠결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야 간사가 권익위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그거고 왜 자료제출을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도 안 해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위원장님, 정승윤 부위원장님 그만두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 동료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인영 위원님 실에 아마 어떤 검색, 캡처 사진은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이인영 위원 저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이인영 위원 그 검색한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그게 돌아가신 김 국장의 유서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보낸 거라 해서 문제가 돼서 제가 사실 엄청나게 난리 치려다가 그냥 점잖게 했는데도 그 정도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발 더 물러서서 도대체 어떤 사진을 보고서 그게 박원순 시장의 유서가 아니라 김 국장의 유서라고 착각 할 만한 거였느냐, 이거를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 준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라면……

○위원장대리 강준현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게 정확히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출하지 못하면, 제가 검색했던 거는 어떠한 사진, 그 사진이 나오면 어떠한 사진도 박원순 시장의 유서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유서가 아니라 김 국장의 유서라고 착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착각했던 근거 있는 사진을, 자료를 좀 보내 줘 봐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게’ 그랬더니 그걸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내 준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간사님 말씀대로 한번 과거 속기록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이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곧 조치하세요.

○이강일 위원 이거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인영 위원 착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전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전현희 위원 의사진행 겸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말씀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순직한 김 국장 관련해 가지고 현재 순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김 국장의 사망 원인에 관해서 야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야당이 괴롭히고 언론 등이 힘들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직 절차를 진행하며 이런 사망의 경위, 순직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승윤 당시 처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비추어 볼 때에 순직 경위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순직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순직 경위에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유 중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그 경위에 관한 부분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위원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족께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대리 강준현 아니, 해명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유족이 반대하는 한 저희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도 지금 유족께서 반대하시는 걸 저희가 의사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등등 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파악해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고학수 위원장님, 이미 여러 분들 의견이 있으셨지만요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논란은 작년 국회에서 AI기본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였지요. 그만큼 단순 이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다만 생성형 AI는 이미 챗GPT가 나오면서 이슈가 돼서 저희가 작년에 사전 점검 과정을 챗GPT 포함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 처리 논란은 비단 딥시크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픈AI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도 초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국내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에 대한 문제로 기관 사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이용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챗GPT도 처음에는 개인정보의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지금은 옵트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게 사전 실태점검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지만 딥시크는 국내 출시 때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인공지능 모델과 달리 데이터 수집 항목 중에 키 입력 패턴이 존재했던 게 논란의 핵심 아닙니까, 현재?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키 입력 패턴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라든지 입력 같은 걸 모은다는 게, 키 입력 패턴이 챗GPT는 현재 수집하지 않는 정보인데 지금 딥시크는 수집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키 입력 패턴 그 자체가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의 핵심은 투명성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용자들의 프롬프트 정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들이 딥시크 회사로 넘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또 딥시크 회사 이외의 제삼자한테도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황이 있는데 제삼자 누구한테 가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정문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나중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 곳에서 국내법에 따라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딥시크만 아니라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그런 전

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이정문 위원** 그리고요 최근에 월요일 날 딥시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을 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AI 특례 신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거는 특례 제도가 반영된 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초 민병덕 의원님 대표발의로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인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입법화 활동을 국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무총리 소속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작년 총리 직무정지 이후로 현재 제대로 출범 못 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는 거 있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이정문 위원** 이 부분 특히 얼마 남지 않은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보훈부장관님도 이 사업 중요성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사정이 있지만 또 결국에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부처는 보훈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현재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현재 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미국에 한 분 계시고요 국내에 네 분 계시고.

○**이정문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현충원의 임정요인 구역을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역이 현재 만장이 되어 있고 대전 현충원도 현재 10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안장의 경우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혹시 추가적인 묘역 조성이 라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사회장으로 하고 또 모시는 현충원도 저희가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니까 임박해서 어디다 모실 공간도 없어서 임시로 매장을 했다 이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국가보훈부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 6·25 참전용사의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 분당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가 참전수당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대체로 6·25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90세 이상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평균 92세이십니다.

○**김상훈 위원** 92세의 굉장히 좀 노령화되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어때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당연히 여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많은 예산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해서 진행하는 중이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상황으로 더 못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노령화로 인해서 한 해에 약 1만 5000분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어쨌든 재정 당국의 재정 상황도 물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김상훈 위원** 그렇다면 그때 월 5만 원이라도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장관님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말씀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사실은 국가보훈부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4.1조 원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향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다시 재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되면 지금이라도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저소득 그다음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도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때 내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보훈부에 서면질의를 했더니만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반전이 좀 있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소관 부처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상훈 위원** 좀 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무연고 국가유공자 현황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계상으로 여덟 분 중의 한 분은 독거노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례를 제대로 치러 주실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모처럼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을 하기로 확정한 만큼 그런 분들의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은 플러스 각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가산이 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더 실행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충남이 가장 많은, 평균 한 44만 원 정도를 지원해요. 서울은 한 26만 5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김상훈 위원** 그다음에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턱없이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평준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지자체에게는 권고 선을 좀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국가보훈부가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23년도부터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지자체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제가 당진시에 가서 감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여건이 여러 개 있지만 우선해—지자체별로 하듯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사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되지 않도록 국가보훈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테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에 대한 테러 예고라든가 아니면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 문자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워딩이 뭐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찰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요.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나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더 대규모로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고, 사실 국조실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심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서부지법 사태가 테러라고 안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그것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건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이런 사태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일반 폭행 사건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국가 특히 법원이, 어떤 공기관이 이렇게 침탈을 당해서 손괴가 되고 그다음에 부장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이…… 부장판사를 잡으려 다니려고 그랬고 그 법원공무원들 옥상까지 쫓겨 가서 거기서 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테러가 아니면 도대체 뭐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면, 테러 여부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그다음에 그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서 테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일단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산하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국무총리 산하지만……

○**김승원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국조실에서 중심을 잡고 꼭 테러……

테러 예고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라든가? 그러면 서부지법 사건이 현재에 발생 안 하리라는 법 없고 그것이 테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예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발생을 해야, 뒷북치는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고요.

테러 여부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의 것으로……

○**김승원 위원** 테러센터에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개별 건에 대해서 회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방 건에 대해서 하시라니까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김승원 위원** 자, 보세요. 현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건물 평면도라든가 또 어디가 약점이니까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쪽 극우단체에서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대책 마련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위원님, 그러니까 테러 여부와 그 불미스러운 사건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좀 별개의 것으로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건 경찰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력을 총동원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승원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는데 그러면 대테러센터에서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 추적해서 잡아내거나 아니면 자금줄이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테러에 동원된 자금이니 금융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시작이 테러라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국가정보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정보원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논의하셨나고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촉구를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서부지법 사건이 언제 생겼습니까? 발생일자가 언제입니까, 서부지법?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1월 달 아닙니까? 1월 19일 아니에요?

지금 2월 19일인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 요구도 못 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니, 요구하실 수 있고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한 달 동안 한 게 없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정부에서. 그 대테러 여부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호하는 업무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위원** 예방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 업무.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방 업무도 저희가 그걸 경찰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정원하고 회의도 안 하고 테러라고 규정도 안 짓고 경찰들한테 주변 상황 잘 점검하라고 그러고.

그려면 인터넷에서 선동하는 사람들 지금 추적해서 잡아들이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건의 수사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경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것 예방 건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의 책임이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그런 자리에, 법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것은 경찰 청장도 개별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대테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대테러센터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한 달 동안 뭐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국무총리실 습격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태만하게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회의만 하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절대 태만하게 있지 않고 회의만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력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하나 보시지요. PPT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전광훈 목사 그겁니다. 지금 현금 70억 원을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극우 보수정당에다가 빌려주고 그 극우 보수정당이 광화문 집회 행사비로도 사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회사처럼 이용해서 지금 교인들의 현금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전광훈 목사의 그 주머니로 다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금들이 지금 계속 선동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과관계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현장에 불 나면 그 불끄는 것만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자금줄이 되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위원님, 그 부분이 어떻게 대테러센터의 임무가 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잘 보셔야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밝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임무가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국무총리 왜 있습니까? 각종 부처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의견을 모아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둔 것 아닙니까, 대테러센터를? 경찰청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와 검찰, 경찰, 국정원 다 포함해서 모인 다음에 회의해 가지고 빠른 예방, 빠른 조치를 하라고 거기다 둈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회의한 것 보고해 주세요. 빨리 회의하시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예방조치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정리해 주시고.

방기선 실장님, 계엄 상황 이후로 다들 예민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답하실 때 감정적인 건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승 위원님.

아니, 전현희 위원님께서구나.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조실장님, 서부지법 테러는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화재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명백한 백색테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총리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테러 지정도 하지 않고 테러대책회의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은 테러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때 당시에 대테러센터에서 배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대테러센터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문자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그때 당시에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행위를 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에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총리실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테러센터에서 관련돼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동으로 듣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부처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공익신고자법이나 부폐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에 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요건에 맞으면 그렇게 된다고……

○**전현희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사태 그리고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해서 현재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현희 위원** 제가 분명히 이걸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 안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전현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신고 요건을 갖춰서 취지 기재하고 증거자료 첨부하면 이분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것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인정되는 공익신고자지요, 네 분들? 답변해 주십시오. 공익신고자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건에 따라서,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사람들 보호조치할 수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보호조치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보호조치가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익 조치 금지 그리고 형의 감경·면제 그리고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가 면제되는 이런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권익위에 있습니다, 권익위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이 네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현재 이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자의 책임 감면에 관해서 해당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에는 그 불이익 조치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전현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권익위에서 해당 서울시경찰청장에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자들에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에 대해서 안내한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들의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것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사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게 반도체 산업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李憲昇 위원 최근에 AI,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호조세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하고 또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 환경적인 리스크에 좀 치여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하자는 법 제정 요구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부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李憲昇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반도체 기업이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더군다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고 최소한 반도체 R&D 인력에 한정해서 또 건강권 보호장치 및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고 기술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규제에 맞추어서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와 연구실 불이 자동으로 꺼져 가지고 퇴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 그러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업체들 공세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물론 법제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마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실장님, 현재 어려운 민생 현실을 감안하면 반도체 법안뿐만 아니고 다른 법안들도 지금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협의한 국정 현안 관련 법안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한 7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무위에도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안을 비롯해 가지고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제대군인법 등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국정과제이거나 민생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등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민생 입법 처리가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민생경제에 돌아갑니다. 입법은 물론 국회가 하지만 정책 실행은 행정부가 해야 하는 만큼 경제 회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보훈부장관님,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이 보훈위탁병원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연로하신 보훈 대상자들 위해 가지고 보훈위탁병원 신청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인사말에 현재 900개인 보훈위탁병원을 올해는 1060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훈부에서 각 지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훈위탁병원 성격이 거리상의 문제로 보훈병원을 찾을 수 없는 보훈 대상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나 치과 같은 특수진료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보훈부에서 특수진료과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 과도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군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모 선정하고 있는데 각 도시나 지역마다 그 지리적인 특성과 인프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 보훈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야 된다, 이거는 최근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공자증으로 골프장 할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겠고.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 단계적 인상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인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李憲昇 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비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로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내년이면 10주년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가 규제가 과도하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율이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익위,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공정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작년 11월에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수수료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은 2월 26일에 시행이고요 쿠팡이츠는 4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그래서 이 상생안에 역행하는 배달의민족 제재해야 된다는 내용의 서면 질의서를 넣을 테니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답 하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현승 위원님 정말로 국가보훈부의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규명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 27명이 파견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명밖에 파견이 안 나왔다 그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특히 조사 업무와 관련된 검찰이 3명, 소방이 3명, 경찰이 3명, 행안부에 있어서도 주로 방재 안전 조사와 관련돼 필요한 3명 등 핵심적으로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특히 인력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뭔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좀 협조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서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활동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편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한 삼십.....

○**김남근 위원** 살펴보셔 가지고, 특히 이게 진상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조사 부서에서 한 명도 지금 파견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게 되면 50조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돼 있고 거기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심리치료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의료봉사 같은 것도 해 주고 생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심리치료 같은 것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상으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따지면, 시행된 것으로 하면 9개월인데 왜 이렇게 심의 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심리치료나 그런 것들은 위원회 구성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피해구제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재풀에서 뽑아서 검증 거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유가족분들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 협의가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조금 더 빨리해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 법이 시행이 됐는데 9개월이 되도록 위원회도 구성 안 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지요.

또 68조에 추모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추모위원회가 추모사업, 추모공원, 추모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

름 같은 것도 공모해야 되고 또 유가족과의 협의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9개월이 되도록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윤석열 정부가 처음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라든가 피해자 구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의 어떤 편향들이 지금 여기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금 시행한 지 1년째 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야 될 텐데 실태조사 한 거 보니까 납품거래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13% 정도만 이게 적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상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근 위원** 아니, 통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13%만 적용이 된다 그러는데.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미연동 합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법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 안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놓게 되면 미연동 합의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떤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일률적으로 받고 있고 아예 그냥 공고를 낼 때 쭉 신청을 하라 그런 다음에 전화를 꽉 돌려 가지고 미연동 합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미연동 합의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연락도 안 준다 그래요.

납품거래 기회를 안 줘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납품대금 연동제…… 지금 또 환율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 가지고 원자재값이 많이, 재료값이 많이 오른 것 알고 있잖아요. 철강이나 나프타 이런 것 다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납품대금 연동제가 꼭 필요한 시점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거기다가 이게 주재료라고만 하다 보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비가 전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10% 이상씩 되는 그런 경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기료가, 특히 도금이라 그러지요 표면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10% 이상 들고 열처리는 에너지가 그렇게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실상 적용이 너무 낮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하신 13%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소사업자가 13.3%고요 이 중 70.3%가 실제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저희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연동제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할 때 13%가 나오는 이유는 미연동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그 13.3%는……

○**김남근 위원** ‘열처리, 전기료, 레미콘 이런 내용이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는 이 13.3%는 실제로 계약한 거래 내용 중에서 연동제 대상이 13.3%밖에 안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알아본 내용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동제가 일반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2025년 금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확인된 결과들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건데요. 현재도 딥시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딥시크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개보위 자체 분석 결과로도 보면 제3 사업자의 통신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딥시크 국내 이용자 한 121만 명 정도의 정보가 동의 없이 톡톡에 모여서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가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내역이라든가 바이트댄스 서버로 간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김병기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확인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김병기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물겠습니다.

테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걱정과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테러라는 것을 제가 좀 관여해 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를 규정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것 같으면 볼 것도 없이 테러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을 텐데 정치적 사건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것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법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이게 20일로 변경됐지만—법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날, 그다음에 현재 테러 가담을 조장·선동하고 있고 경찰 방어를 뚫을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도 막 제시되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이름을 대면, 전광훈 씨인데요. 굉장히 우려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이런 것들도, 금융거래, 통신 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려가 된다면 정말 이건 공격적으로 의혹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조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제가 국가정보원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국가정보원도 요새 난리라서……

딥시크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패권 전쟁이 한창인데 자칫하면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조급한 우려 섞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딥시크만 봐도 이게 저비용에 미국의 오픈AI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 전망을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 1.8% 정도로 저성장의 그런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AI로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AI라는 게 핵심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반도체 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 그리고 일부 간파하기 쉬운 것이 전력이지 않겠습니까? 앞의 2개야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뭐 여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게 송배전망 같은 투자도 정부가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보여요. 당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우리 당에서 일부 더욱더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SMR, 소형원자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차세대 국가의 존망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조기에 닫히면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력망법이 제가 지금 회의장에 앉아서 들어 보니까 산자위는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AI 관련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MR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기 위원** 논란이 있음에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DJ 정부, 김대중 정부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사실 초고속 인터넷망, 정보고속도로를 깔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했잖아요. 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AI에 대한 우리의 투자 여부, 지금 사실 예산이 들어가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는데 딥시크가 오히려 그 희망을 좀 준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그래서 AI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돌파가 되면, 돌파 여부에 명운이 걸렸다고 하는 각오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내일과 월요일에 법안소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법안소위에서 전자상거래법도 이번에 함께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전자상거래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관련 법이 올라가면 함께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 법이 이번에 아마 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선입선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도 같이 논의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강민국 간사님, 월요일 날 2법안소위 할 때, 제가 낸 전자상거래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할 때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 법이 올라가면 여러 의원님들이 낸 법들을 함께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재작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중인 신청도 하고 한 이유가 한 기업을 제가 논하려 하는 게 아니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혹시 아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런 법이 있는 건 알고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 10조, 14조가 있는데 7조에 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돋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10조에 뭐라 돼 있느냐면 정보부는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14조에는 뭐라 돼 있느냐면 국가정보부는 중국 정부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계속 논했던 건데 그에 연장돼서 딥시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 앱 잠정 중단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강민국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딥시크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그리고 둘째는 과다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셋째가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거 포함해서 추가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지금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이용자인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데이터를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전송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전송한 이유가 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만 파악을 했고 데이터의 내용이나

목적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유출 범위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국내 이용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넘어간 데이터 내역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하드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드코딩을 많이 한 상태라서 실제 트래픽의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실태 점검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실태 점검은 작년에 저희가 오픈AI라든가 메타 이런 회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5개월 정도 걸렸고요. 작년에는 6개 회사하면서 5개월 걸렸는데 지금 한 회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말 이런 기막힌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빨리 조사가 돼야 되고 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딥시크가 2월 10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서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딥시크가 개보위의 딥시크 앱 서비스 잠정 중단 권고를 바로 수용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의 귀결점은 결국은 틱톡이라고 보거든요. 좀 다르게 보시나요? 본 위원은 결국은 틱톡의 문제라고 보는데 틱톡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틱톡에 관해서는 별도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문제는 중국의 AI 서비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데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좀 구체적 대처 방안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국내에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 예를 들면 딥시크나 틱톡이나 이런 이슈들은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주요

국가들 감독기관들하고 공조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민국 위원** 지금 계류 중인 국내대리인 지정제, 이런 것도 조속히 돼야 되겠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 가지고 국내대리인 제도가 생기도록 하면 국내에서 법 집행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CCTV 관련한 거, 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 혹시라도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휴식 시간에 제가 정리된 표 하나를 그사이에 조금 봤는데요. 그 표를 보니까 작년 한 해에 매달 몇천 건씩, 1만 건 가까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테스트라고 표시했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라고 휴식 시간에 짧게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한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 결과가 나오면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한창민 위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딥시크 관련된 것도 개인정보 문제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한창민 위원** 이번에 디지털 교과서를 대통령 시행령까지 바꾸면서 진행했던 진행 상황이랑 다 아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한창민 위원**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최대 화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보법과 개보법 시행령을 보면 이런 법령을 개정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것 그것 진행하셨습니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진행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는지, 보통 저런 평가가 여러 건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한창민 위원**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정보, 옛날의 나이스 사태처럼 예민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안 들여다보셨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들여다보고 있고요, 들여다봤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냐, 그 정도는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 실무자가 작년에 여섯 차례인가 실무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사전 실태점검 과정을 또 거칠 예정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처럼 평가를 요청했고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내용의 요청서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관련 조항을 한번 보시지요. 교육부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서 양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조항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 3-2까지 시행령의 조항에 관한 내용이 있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평가서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 답변한 게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침해요인 평가서는 전체 평가 중에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한창민 위원** 한번 보시지요. 개보법 시행령 9조의3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 요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세 가지 항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은 침해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이나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리면 이것 진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제가 저 법령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수천 건의 침해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건 하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이 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AI 디지털교과서가 개인정보하고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항, 항목에 대해서 요청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체 분석이나 관련된 문제 대책도 당연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실무자가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창민 위원** 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사전 실태점검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창민 위원** 조금 있으면 AI 교과서, 학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전에 진행이 된 다음에 검토가 끝나고 도입이 되고 하는 과정이지 무슨 실태조사 얘기를 지금 꺼내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이 부분은 실무자가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행됐어야 맞다는 거고요.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 한창민 위원 진행 안 됐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 한창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저희들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행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요.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월 7일 공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완점을 체계적으로 점검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다음 주에 개학하는데요 이 점검을 지금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내용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침해요인 평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실무진에서 진행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한창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

○ 위원장대리 강민국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덕 위원 고학수 위원장님, 아까 비상계엄 중에 국회 주변 CCTV 열람과 관련해서 개보법 위반 여부 조사해 보셨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아까 한창민 위원님.....

○ 민병덕 위원 검토했습니까, 개보법 위반 여부를?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까 휴식 시간에 그 현황표만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 민병덕 위원 제가 금요일 날 군인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열람하게 됐는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법률 위반 여부 목요일 날 오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 유철환 위원장님, 아까 제가 꽈종근 전 특전사령관 공익신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익신고 된 것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 보호조치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보호조치를 위한 안내문,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안내문이 그겁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보호조치했냐고 묻는 거예요. 책임감면 신청서 보냈습니까? 수사기관에 책임감면 신청서 보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책임감면 신청서가 아니라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것도 최근에 저희가 보호를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민병덕 위원**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합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서류를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도급대금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그게 23년 6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10월에 실행됐습니다. 이게 15년 만에 통과된 겁니다, 15년 만에. 법안소위 할 때 생각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계획 문서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발 안착시킵시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이것 보니까 ‘계약서 작성하나?’라고 했더니 원사업자는 81% 그리고 건설업종에서 보면 원사업자가 91%, 이것 보면 안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 느낌이랑 좀 달라서 제가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긴급 조사를 했거든요. 많이는 못했습니다. 41개를 했는데 연동제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연동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는 곳이 35곳입니다.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동제 미적용 사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원사업자하고의 합의’ 또 ‘몰라서’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합의했어도, 미적용하기로 합의했어도 계약서 써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안 썼습니다.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미적용하기로 합의했어도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이것 법률 위반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정위에서 한 설문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실제 느낌이랑 달라서 하는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저는 어떤 원재료가 가격 변동 폭이 큰지 이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핵심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있었으면 하도급대금이 실제로 변동됐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어서 실제로 하도급대금이 변동된 사례가 있나라고, 자료가 있나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갑갑합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가지고 홍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루미늄 창호를 만들어서 건설업체에다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5% 이상 변동될 때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알루미늄 가격이 7.5% 상승했고 120만 원을 줄여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런 성공 사례를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핵심은 이게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합의 때문입니다. 합의하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사업자가 전화해 가지고 ‘납품단가 연동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랑 계약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합니까?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 안 해도 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갑과 을이 대등하지 않은데 합의하면 그 조항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약한 을은 합의 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합의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일단 저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저희 실태조사와 실제 현장에서의 느낌이 다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직권조사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일단 그 부분에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정 부분은 일단 금년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개보위위원장님, 저는 개보위위원장님의 태도가 이번 내란 사태 그리고 조금 전에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지털교과서 문제 이것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거부권까지도 행사되고 어마어마한 예산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핵심적인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 태도가 ‘왜 자꾸 귀찮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박상혁 위원**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테스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CCTV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 계엄 사건으로

알려진 것 아닙니까? 또 디지털교과서 문제 아직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해 보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가 이걸 교과서로 만들지 참고서로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큰 논쟁이 붙고 있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진지하게, 개인정보의 산업적 진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셔야 할 부처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듭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조금 물겠습니다.

지금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 인수한다라는 것 언론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마 부족한 인수 자금을 계열사인 한화비전을 통해서 한 3000억 정도 동원해 가지고 인수하려다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화비전은 전혀 관련 없는, 반도체 설계 해외법인을 인수하고 CCTV라든지 이런 전혀 관계없는 업체예요, 아워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의 3세 경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동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한화비전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아워홈을 인수하고 나서 혹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대기업들, 재벌의 관행들을 보면 부당지원행위, 우리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수 후에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왜냐하면 이것을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법상의 그런 위반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예민하게, 왜냐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평가가치가 1조고 아워홈은 1조 한 5000억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좀 여쭤볼게요.

오전에도 5·18 문제 조금 나왔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5·18 조사위원회가 끝난 후에 그 이행과 권고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국조실장님, 아마 지난번 예결위 때 안도걸 의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11개 권고 사항 중 후속적으로 여러 부처가 맡아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것 질문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국조실에서 담당을 해서 좀……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어렵듯이 기억납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권고 사항 중 두 가지가 보훈부 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PPT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보니까 답변이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혁 위원** 국조실장님, 이것 정확하게 배분이 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보훈부는 우리 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개의 권고 사항에 4개 부처가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는 5·18 기념사업 관련 법률이 3개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중에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이것은 국조실에서 배분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배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배분이 된 거예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장관님, 어떤 취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배분이, 국조실에서 했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정확하게 배분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 국조실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위가 끝나면 이 문제, 여러 가지 후속 작업 중에 연구라든지 기록물 이관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 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국회로 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한덕수 총리 때 이것 이관 절차 협조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비서실장님, 혹시 들어 보신 바 있어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저도 잘……

○**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총리께서는 이관 절차를 적법하게 지시하셨는데 대통령비서실의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이것을 막았다라는 전언을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분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상혁 위원** 필요하면 답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그런 권고 사항은 이미 기본적인 3개의 법률에 담겨져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5·18 기념사업 관련되는 것은요 국방부, 법무부에 해당되는 특별법 그리고 행안부의 보상법에서 있고요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담겨져 있는데 다시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신중하게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 국조실에서 잘못 배분했다는 얘기예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좀 챙겨 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은 국조실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한기정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후 질의에 3시쯤 나가서 4시쯤 돌아왔는데 그 1시간 동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주관하고 왔습니다. 좀 공교롭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당선되고 나서 핵심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안이 배달앱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상생협의안에 도달시키려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 갑자기 상생협의체를 띄우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뒤로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기정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능력이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사실 낙심천만입니다, 이것.

지난 12일부터 자영업자 단체들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정부 주도 상생안에 대한 무효화 주장하고요. 특히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 폐지 규탄하고 있거든요.

울트라콜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작년부터 상생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면)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으니까 PPT로 대신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쪽짜리 상생안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정말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이것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면 국가가 폭력행위한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나름 참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상생 방안이 상황을 완전히 더 꼬아 버렸어요, 시장 상황을.

자영업자들 보면 임차료, 인건비보다 배달 중개수수료가 사실은 포션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작년 상생 방안을 만드는 데 핵심으로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는 업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거부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제삼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수결로 해 가지고 상생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아주 배달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체

들은 협의를 거부하고 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다수결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일정 부분 참가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줬던 상생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자율적인 상생 협의안을 만들었고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 쿠팡 모두 지금 곧……

○이강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

○이강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좀 합리적인 방안을 더 좋게 만들어 내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그것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게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이전에 했던 정부의 안이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것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상당히 눈물 짓는 일이 벌어지는 데요. 배민이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이게 상생안이 실현되기도 전에 상생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배달을 주로 하는 업주들한테 이익이 됐던 프로그램 상품을 없애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배민의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뒤통수 친 거거든요. 이것은 상생하는 게 아닙니다.

울트라콜도 역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모르실 수 있는 분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월 8만 8000원의 정액으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이게 강제로 정률제인 오픈리스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 중 개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이 정한 배달 형태로만 강요받게 되는 푸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위원장님, 결국 울트라콜 폐지하고 UI 개편하는 이런 문제들, 인위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게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콜 폐지 관련해서요.

○**이강일 위원** 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7개월 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이강일 위원** 배달앱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UI……

○**이강일 위원** 배민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부분 지금 거의……

○**이강일 위원** 저 마무리할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민국** 그러시지요. 1분 더 드리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그러면 드디어 발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니, 그래도 좀…… 한두 달 내에 나온다 이 정도는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기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래도 어마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을 해서 상당히,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논의할 주제들 까지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진짜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강일 위원** 따로 보고하신 적이 없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별도로 보고를……

○**이강일 위원** 이번에는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또 준비를 많이 했을 건데…… 경인사 이사장님 또 88관광개발 사장도 오셨지요? 독립기념관장님도 오셨고 또 보훈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장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 오늘 따로 업무보고 하실 것은 없지요?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정무위 처음 오셨고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데 시간 2분 드리면, 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 예,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민국 2분만 드릴게요. 한번 해 보시지요.

○전현희 위원 2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왕 쓰시는 것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 부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하급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4조입니다. 불법한 상급자의 명령은 안 따라도 된다, 그래서 항명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백한 위법·불법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동의합니다.

○전현희 위원 12·3 내란 사태가 사실상 위헌인 지금, 그래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나 선관위 봉쇄를 지시하고 또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위헌·위법으로 보시는 거지요? 국회·선관위 봉쇄 지시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령,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제가 판단할……

○전현희 위원 그냥 단어 그대로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위헌·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고 주무 부처가 권의위입니다.

지금 대통령경호실의 김성훈 차장이 부하 직원에게 비화폰의 불출기록 그리고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제 지시를 부하 직원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 2명을 직무 배제 조치, 불이익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은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전현희 위원 사실관계 파악을 할 필요 없이 단어 자체로 비화폰 불출, 서버 삭제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면 위법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불법한 지시에 따르는 거라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원이 직무 배제 조치가 돼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무 부처로서 행동강령 위반을 직권 조사하고 그리고 직무 배제 조치 원상회복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장대리 강민국**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자료제출도 안 하면서 맨날 파악만 하면 뭐 하냐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그것은 내일 아마 좌우지간 해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오늘 회의 중 한창민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이현승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의 직원을 비롯한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전현희 한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국무1차장 김종문

국무2차장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달원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손영택

정무실장 박경은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사무총장 장영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윤지웅

부원장 박찬수

국토연구원

원장 심교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옥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정언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원장 김준경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오승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영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허재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혜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백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권혁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웅석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훈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영범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문화정책관 나치만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의료심의관 한상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
88관광개발(주)
사장 서정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사무처장 유성욱
조사관리관 안병훈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시장감시국장 김문식
카르텔조사국장 문재호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